

(2) 공기업회계(지역개발기금 및 수도사업특별회계)

- 세입 결산액 9,807억 5,400만원
- 세출 결산액 8,602억 9,600만원
- 차 인 잔 액 1,204억 5,800만원이며

이 중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에 의한 다음연도 사고이월액 372억 9,5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31억 6,300만원임.

(3) 기타특별회계 (도시철도건설사업비 등 9개 특별회계)

- 세입 결산액 7조 2,520억 1,800만원
- 세출 결산액 6조 2,133억 1,500만원
- 차 인 잔 액 1조 387억 300만원이며

이 중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3,562억 8,500만원 및 사고이월액 732억 6,000만원 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9,7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,090억 6,100만원임.

나. 기금결산

2015회계연도 말 현재의 기금총액은 7,181억 9,100만원으로 2014회계연도 말 6,607억 6,800만원에 비하여 574억 2,300만원 이 증가하였으며, 14개 기금의 종류 및 현재액 내역은

- 재정투융자기금 1,240억 7,600만원
- 중소기업육성기금 2,682억 7,000만원
- 식품진흥기금 69억 3,900만원
- 기후변화기금 143억 4,000만원
- 사회투자기금 228억 5,700만원
- 도로굴착복구기금 172억 6,600만원

- 여성발전기금	2억 500만원
-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	117억 1,500만원
- 사회복지기금	295억 300만원
- 체육진흥기금	34억 100만원
- 감채기금	93억 8,300만원
- 재난관리기금	1,968억 9,700만원
- 남북교류협력기금	79억 9,800만원
- 대외협력기금	53억 4,100만원임.

다. 채권현재액

2015회계연도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1조 3,036억 3,600만원으로 2014회계연도말 1조 6,368억 7,900만원에 비하여 3,332억 4,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, 채권의 회계별 현재액은

- 일반회계	3,640억 1,100만원
- 공기업회계	160억 2,500만원
- 기타특별회계	1,518억 6,100만원
- 기금	7,717억 3,900만원임.

라. 채무결산

2015회계연도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3조 4,229억 9,800만원으로 2014회계연도말 3조 2,410억원에 비하여 1,819억 9,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, 채무결산 회계별 내역은

- 일반회계	6,092억 5,100만원
- 공기업회계	15억 원
- 기타특별회계	2조 8,122억 4,700만원임

마. 예비비 지출

(1) 일반회계의 예비비 집행현황은

- 예비비 예산액	1,569억 4,400만원
- 지출결정액	975억 3,700만원
- 지출액	955억 5,700만원
- 이월액	0원
- 지출결정액중 미집행액은	19억 8,000만원임.

(2) 공기업특별회계의 예비비 집행현황은

- 예비비 예산액	68억 8,900만원
- 지출결정액	51억 2,200만원
- 지출액	51억 2,000만원
- 이월액	0원
- 지출결정액중 미집행액은	200만원임.

(3)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집행현황은

- 예비비 예산액	217억 6,600만원
- 지출결정액	75억 3,800만원
- 지출액	75억 2,100만원
- 이월액	0원
- 지출결정액중 미집행액은	1,700만원임.

바. 재무회계 결산

- (1) 2015회계연도 말 재무회계상 총자산은 123조 4,547억 3,100만원으로 2014회계연도 말 총자산은 121조 8,388억 4,500만원에 비하여 1조 6,158억 8,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,

그 결산내용은

- 유 동 자 산	5조 5,097억 9,200만원
- 투 자 자 산	15조 2,338억 2,500만원
- 유 형 자 산	102조 2,742억 8,600만원
- 기타비유동자산	4,368억 2,800만원임.

(2) 2015회계연도 말 재무회계상 총부채는 6조 6,242억 4,500만원으로 2014회계연도 말 5조 8,442억 2,100만원에 비하여 7,800억 2,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,

그 결산내용은

- 유 동 부 채	1조 6,223억 9,600만원
- 장기 차입 부채	2조 9,888억 6,300만원
- 기타비유동부채	2조 129억 8,600만원임.

(3) 2015회계연도 말 재무회계상 순자산은 116조 8,304억 8,600만원으로 2014회계연도 말 순자산 115조 9,946억 2,400만원에 비하여 8,358억 6,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,

그 결산내용은

- 고 정 순 자 산	97조 4,954억 원
- 특 정 순 자 산	7조 2,271억 6,600만원
- 일 반 순 자 산	12조 1,079억 2,000만원임.

(4) 2015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는 1조 6,315억 700만원 흑자로 2014회계연도 6,202억 5,400만원에 비하여 1조 112억 5,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,

그 결산내용은

- 수	익	22조 9,241억 2,600만원
- 비	용	21조 2,926억 1,900만원
- 재정운영결과		1조 6,315억 700만원임.

3. 참고사항

가. 지방자치법 제134조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 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,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나.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2조

법 제134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.

다. 지방재정법 제50조

-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·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-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(事故移越費)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1.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
2.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

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

3. 공익·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

4.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

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라. 지방재정법 제52조

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·세출결산상 잉여금(剩餘金)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.

1. 다른 법률에 따른 금액
2. 제50조에 따른 이월금

마. 지방재정법 제53조

① 지방재정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명백하게 처리되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처리의 기준(이하 "지방회계기준"이라 한다)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되, 지방재정의 상태와 운용 내용을 객관적이고 통일적이며 명백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바.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사. 지방공기업법 제35조

- ①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을 하여야 한다.
- ②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지방직영기업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해당 연도의 사업보고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아.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

- 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
- ②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한다. 다만,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(이하 "서울특별시 등"이라 한다)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.
 1. 의회 의원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

2. 공인회계사·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
3.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·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 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자
4. 정부투자기관,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 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자
5.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

③ 의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자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 하되 그 방법은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 64조에 따른다.

자.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

- ① 감사위원은 서울특별시시장 및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"시장 등"이라 한다)이 「지방재정법」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작성한 세입·세출결산 및 그 증명서류로 검사업무를 수행한다.
- ② 감사위원은 시장 등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명서류를 이송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검사를 마쳐야 한다.
- ③ 감사위원은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4조제3항에 따른 감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모든 감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결산검사 마친 후 10일 이내에 시장 등에게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감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한다.
- ④ 감사위원의 결산검사업무는 감사의견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함으로써 끝난다. 다만, 선임된 감사위원의 신분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.

2015회계연도 결산 총괄

○ 예산회계 결산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 회계별	예산 현액 (A)	세입·세출결산					채무 상환	다음년도이월비				보조금 집행잔액 (F)	순세계 잉여금 (B)-(E)- (F)	집행잔액	
		차인 잔액 (B)=C-D	세입 결산 (C)	결산율	세출 결산 (D)	결산율		소계 (E)	이월률	명시	사고			(A)-(D)- (E)	잔액률
합 계	27,112,104	3,193,965	28,715,600	105.9%	25,521,635	94.1%	-	781,763	2.9%	574,384	207,379	31,193	2,381,009	808,706	3.0%
일반회계	19,213,944	2,034,804	20,482,828	106.6%	18,448,024	96.0%	-	314,923	1.6%	218,099	96,824	31,096	1,688,785	450,997	2.3%
특별회계	7,898,160	1,159,161	8,232,772	104.2%	7,073,611	89.6%	-	466,840	5.9%	356,285	110,555	97	692,224	357,709	4.5%
공기업	960,096	120,458	980,754	102.2%	860,296	89.6%	-	37,295	3.9%	0	37,295	0	83,163	62,505	6.5%
기 타	6,938,064	1,038,703	7,252,018	104.5%	6,213,315	89.6%	-	429,545	6.2%	356,285	73,260	97	609,061	295,204	4.3%

○ 재무회계 결산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재정상태				재정운영결과		
	자산(1)	부채(2)	비율	순자산 (1-2)	비용(1)	수익(2)	운영결과 (1-2)
2015	123,454,731	6,624,245	5.37%	116,830,486	21,292,619	22,924,126	(1,631,507)
2014	121,838,845	5,844,221	4.80%	115,994,624	19,442,941	20,063,195	(620,254)
증 감	1,615,886	780,024	0.57%	835,862	1,849,678	2,860,931	(1,011,253)

○ 기금결산, 채권·채무 결산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2014년도말	당해연도 증·감			2015년도말
		순증감	증가	감소	
기금	660,768	57,423	1,495,956	1,438,533	718,191
채권	1,636,879	△333,243	622,955	956,198	1,303,636
채무	3,241,000	181,998	923,805	741,807	3,422,998